



발행번호 2-420-2022-48348

전주지방검찰청

(전화번호 1301)

분류기호 및
분서번호

2022. 5. 3.

수 신



발신 전주 지방 검찰



제 목 불기소이유통지

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

① 사건 번호		전주지방검찰청 2022형제10호
② 고 소 (발) 인 성 명		해당사항없음
피의자 [피고소(발인)]	③ 성 명	정 [redacted]
	④ 주민등록번호	[redacted]-2*****
⑤ 죄 명		가.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
⑥ 처 분 검 사		박재호
⑦ 처 분 년 월 일		2022. 4. 29.
⑧ 처 분 요 지		가-기소유예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⑨ 불 기 소 이 유		별지 참조
⑩ 비 고		

2022. 4. 29.

사건번호 2022년 형제10호

제 목 불기소결정서

검사 박재호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.

I. 피의자 정 [REDACTED]

II. 죄 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

III. 주 문

피의자의 일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은 기소유예 하고, 일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.

IV.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

1. 피의자는 교사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임에도, 2021. 3. 2.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아동과 같은 반 학생들에게 고함을 질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

○ 피해아동의 모는 피의자가 2021. 3. 2.경부터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로 있으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아동과 같은 반 학생들에게 고함을 질러 피

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.

○ 피해아동은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피의자가 다른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 다른 학생들이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으나, 피의자가 피해아동에게 소리를 지르는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다(1권 제49 쪽)

○ 피의자는 학생들 간의 다툼이 있거나 주의를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게 인성이 높아진 경우는 있으나, 특별한 이유 없이 학생들에게 고함을 질러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며 범행 부인한다.

○ 피해아동은 피의자가 자신에게는 소리를 지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, 피해아동의 모와 피해아동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소리를 지르게 된 구체적인 상황이나 다른 학생들의 피해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점, 전라북도 아동보호

전문기관의 집단시설사례 조사결과(2권 제113쪽)에 의하면 옆 반 교사가 '피의자가 원래 목소리가 큰 편이다'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반 소속 다른 학생들의 보호자들로부터 피의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신고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아동의 모와 피해아동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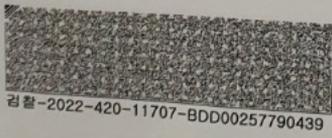
○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○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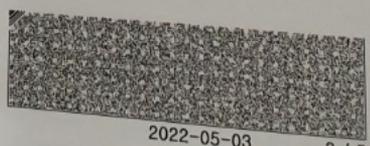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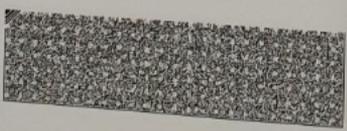
2. 피의자는 교사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임에도, 2021. 4. 19. 피해 아동이 가져온 물병을 회수하여 하교할 때까지 돌려주지 않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물을

마실 수 없게 하여 탈수 증세를 발생시키게 하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어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

- 피해아동의 모는 피해아동이 2021. 4. 19. 코로나19로 인해 페트 재질의 물병을 학교에 가져갔는데 피의자가 피해 아동이 가져온 물병을 빼앗아간 후 하교할 때까지 돌려주지 않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물을 마실 수 없게 하여 탈수 증세를 발생시키게 하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어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고 주장한다.
- 피의자는 2021. 4. 20. 피해아동이 페트 재질의 물병을 수업시간에 수회 비트는 등 수업에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아동이 들고 있던 물병을 가져다가 칠판 앞에 두었는데 피해아동이 수업시간이 끝난 후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물을 마셨다고 진술하며 범행 부인한다.
- 피해아동은 물병으로 소리를 내자 피의자가 물병을 가져갔는데 그 후 피의자에게 물병을 달라고 말을 하지 못하였고 물을 전혀 마시지는 못하였지만 물을 마시지 못한 것으로 인해 힘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(2권 제43쪽).
- 피의자가 피해아동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하고 있고, 물을 마시지 못해 힘들지는 않았다는 피해아동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아동의 모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위 물병을 하교 때까지 돌려주지 않아 피해아동에게 탈수 증세가 발생하게 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



검찰-2022-420-11707-BDD00257790439



2022-05-03

○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○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.

3. 피의자는 교사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임에도, 2021. 4. 20. 교실에 레드카드가 있는 곳에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이고, 수업종료 후에도 피해아동을 하교시키지 아니하고 남긴 후 약 14분간 교실 청소를 시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)

○ 피해아동이 수업시간에 페트 재질의 물병으로 소리를 내어 교실 내 레드카드가 있는 곳에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여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한 사실, 같은 날 하교시간 무렵에 피해아동을 남게 하여 교실청소를 하게 한 사실, 2021. 4. 21. 피해아동이 등교거부한 사실, 피해아동을 진단한 의사가 2021. 10. 29. 발급한 진단서에 '야경증,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'라는 병명이 기재되어 있고 '환아(피해아동)의 보호자는 환아가 선생님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은 후 수치심을 심하게 느꼈고, 학교공포증도 생겼다고 한다. 이에 2021. 9. 23.부터 환아의 야경증 등 병명과 관련하여 놀이치료와 학습치료를 시행 중이며 향후 6주 이상의 부정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'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(2권 제119~120쪽), 2009년 체벌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그린마일리지 제도(상벌점제)를 전북 교육청에서 2016년 폐지한 사실(1권 제77쪽)은 각각 인정된다.

○ 레드카드 옆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은 사실상 벌점에 해당하고 레드카드를 받은 학생에게 교실청소를 시키는 것은 벌점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에 해당



하므로 피의자는 전북교육청에서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상벌점제를 교실에서 사실상 실시하였고, 이로 인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인 피해아동에게 수치심 등을 일으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.

- 피의자가 초범인 점, 33년간 초등교사로 일하면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, 피해아동의 행동 개선을 위한 교육의 의도로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.
-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.

검사

(인)